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정부패방지법

주체108(2019)년 4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제1장 부정부패방지법의 기본

제1조 (부정부패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정부패방지 법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건전한 국풍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부정부패행위의 정의)

부정부패행위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권을 악용하여 대중의 의사와 요구, 국가적이익을 침해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부정부패행위의 미연방지원칙)

부정부패행위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초인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허무는 독초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준법교양과 장악통제, 법 적투쟁을 강하게 벌려 부정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4조 (부정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취급처리원칙)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조사와 취급처리를 법적요구대로 엄격하게 하는것은 국가의 기 강을 바로세우고 부정부패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국가는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다 문제시하고 법적으로 엄격히 조사하여 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맞게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5조 (부정부패와의 전군중적인 투쟁원칙)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존립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성문제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쳐나서도록 한다.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각급 당 및 정권기관, 행정경제 및 근로단체,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의 부 원이상 일군, 공장, 기업소의 직장장, 협동농장의 작업반장이상 일군에게 적용한다.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일군이 법적추궁없이 해임되었거나 연로보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2장 부정부패행위의 형태

제7조 (독단과 전횡을 부리는 행위)

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적인 일을 정해진 관리규범과 합의질서를 어기고 자의대로 처리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부문 또는 단위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을 준비하 면서 련관단위와의 합의질서를 지 키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 게 처 별한다.

제8조 (사업실적을 허위보고하는 행위)

일군은 리 기적 또는 기관본위주의적목적에서 개 인 또는 기관의 사업실적을 허위보고하는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로 국가적 또는 다른 기관의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9조 (부당하게 등용, 표창하는 행위)

일군은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어기고 정실, 안면관계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정치 적으로 내세우거나 간부로 등용 또는 중요직제에 배치되게 하거나 표창 또는 명예칭호를 받 게 하거나 물질적대우를 받게 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0조 (부당하게 일군 또는 종업원을 해임, 해직시키는 행위)

일군은 정당한 리유없이 아래일군 또는 종업원을 해임, 해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 다.

자기의 위법사실 또는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우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 게 처 별한다.

제11조 (뢰물, 비법적인 접대, 봉사를 받는 행위)

일군은 지도사업, 검열 등 공적용무로 사업하면서 대상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나 식사대접, 편의봉사를 받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우와 같은 행위를 할것을 요구 또는 암시하거나 해주지 않는데 대하여 트집을 걸거나 제기된 자료를 과장, 묵살, 약화시키거나 그러한 행위로 많은 재산적손실 또는 물의가 일어나게 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2조 (허가 및 수속사업을 부정당하게 하는 행위)

일군은 정당한 리유없이 건설허가, 영업허가, 수출입허가, 살림집리용허가 같은 각종 허가 와 주민등록, 거주수속 같은 각종 수속사업을 제때에 해주지 않거나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망탕 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졌거나 국가적 또는 해당 부문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3조 (생산물 또는 수입금의 루락, 비 법처분행위)

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각종 생산물과 판매금, 봉사 사료금, 수수료 기타 수입금을 정해진 재정 및 물자관리통계에서 루락시켜 이런저런 명목으로 망탕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물자, 자금을 사취하거나 낯내기 또는 퇴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4조 (지원물자를 자의대로 처분하는 행위)

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바친 지원금과 지원물자,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보내온 기증금, 협조물자같은것을 정해진 재정 및 물자관리질서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않고 망탕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물자, 자금을 사취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기부 또는 지원하거나 낯내기 또는 퇴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5조 (비법적인 경영활동을 조장시키는 행위)

일군은 비법적으로 개인이 국가의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리용하게 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생산 및 운송 또는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만 걸어놓고 돈벌이를 하게 하거나 입직금을 받아들이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졌거나 이루어진 수입금을 사취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6조 (살림집배정질서를 어기는 행위)

일군은 국가적으로 건설한 살림집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살림 집을 정실, 안면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퇴물을 받아가졌거나 자기가 여러번 살림집을 배정받아 리용하거나 가족, 친척들에게 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7조 (직무용 및 사업보장용승용차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일군은 직무용 및 사업보장용승용차를 사적용무에 리용하거나 직 권을 리용하여 편제없는 승용차를 비법적으로 구입,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하게 하였거나 본인 또는 가족, 친척들이 자가용처럼 리용하게 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8조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거나 물질적부담을 시키는 행위)

일군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아래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자기 단위 종업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거나 물질적부담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 교육, 보건부문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거나 학생, 입원환자들에게 물질적부담을 준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19조 (부당하게 상급학교추천 및 입학, 학부, 학과선정 및 졸업배치를 하는 행위)

일군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정실, 안면관계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상급학교에 추천 및 입학하게 하거나 학부, 학과를 선정하게 하거나 성적을 올려주거나 졸업배치를 하게 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졌거나 우수한 대상이 루락되게 한것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 20조 (체육선수선발기준을 어기는 행위)

일군은 정해진 체육선수선발기준을 어기고 실력이 낮은 선수가 중요한 체육단에 선발되게 하거나 중요 국제국내경기에 참가하게 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졌거나 우수한 선수가 루락되어 경기성적

이 락후하게 된것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1조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

일군은 사람들에게 쌍말로 욕설을 퍼붓거나 대중앞에서 근거없는 허물을 들썩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구타, 폭행을 하거나 모임장소에서 내쫓거나 인격에 심히 손상을 줄수 있는 감투를 씌우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 (안일부화한 행위)

일군은 때없이 술판, 먹자판을 벌리거나 행정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리혼 하거나 다른 녀성과 부화한 관계를 맺거나 추잡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적으로 술판, 먹자판을 조직하거나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에게 성교를 강요하거나 사실 혼생활을 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3조 (법권을 악용하는 행위)

법 일군은 법권을 악용하여 신고 또는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 약화시키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졌거나 자기의 위법사실 또는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거나 우와 같은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4조 (국가의 법과 공동생활규범을 어기는 행위)

일군은 국가의 법과 규정, 공동생활준칙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부정부패행위방지의무

제25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질서, 행동규범작성)

성, 중앙기관과 해당 기관은 이 법에 준하여 자기 부문과 단위의 특성에 맞게 부정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질서와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아래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며 그 리 행정 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 하여야 한다.

제26조 (검열감독기관의 임무)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검열감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정부패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부과된 권능의 범위안에서 엄격히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기된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한 조사범위와 내용이 해당 검 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능에 맞 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때에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7조 (법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 안전기관은 검 찰감시법, 사회 안전단속법집 행과정 에 부정부패 행위 의 징후가 발견

되거나 그에 대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그 근원을 밑뿌리가 드러날때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한 검찰, 사회 안전기관의 조사취급처리관할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관리 및 행동규범 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나타난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통보하며 법적으로 조사, 처리하여야 할 문제는 해당 법기관에 위법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29조 (공민의 임무)

모든 공민은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부정부패 행위를 밝히기 위한 해당 기관의 조사사업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취급, 처리

제30조 (신고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 및 위법자료를 얻었거나 목격한 경 우 제 때에 각급 인민정권기관, 검찰, 재판, 사회안전, 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처리)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 및 위법행위를 신고받은 기관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며 정해 진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질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감시법, 사회안전단속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 에 따른다.

제32조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취급, 처리)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취급,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행정처벌법, 검찰감시법, 사회 안전단속법 에 규제 된 절 차에 따라 각급 사회 주의법 무생 활지 도위 원회 와 내 각, 검찰, 재판, 사회안전, 보위기관이 한다.

제33조 (부정부패행위로 이루어진 재산의 몰수 및 회수)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해당 법기관은 부정부패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 살림집같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정부패행위로 발생한 국가 및 개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해당 법기관은 부정부패행위로 발생한 국가적 및 개인적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처 리하여야 한다.